



고용노동부

# 고 용 노 동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시행('25.7.17.) 관련 협조 요청

---

## 1. 관련

가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시행('25.7.17.)

나. 대통령 지시사항('25.7.1, 7.5)

## 2. 금년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어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(질병청 7.16. 발표 기준)하였습니다.

- 지난 7.3. 경북 영주시 소재 농장에서 제초작업 중 이주노동자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, 7.7. 경북 구미 소재 건설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38도의 높은 온도에서 작업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.

-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“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, 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달라” 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.

## 3. 특히,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'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' 등을 의무화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고,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의 벌칙이 적용됩니다.

## 4. 이에 각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역대급 폭염상황에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7월 17부터 시행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별 협회·단체,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안내 및 홍보 (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사업장 대응지침 등 활용)

\* 특히, 이주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내·홍보 강화(17개국 모국어로 작성된 온열질환 예방지침 활용)

② 직접 발주하거나 위탁을 주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폭염 고위험 업종의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

\* (직접수행 및 위탁수행) 공공근로, 환경미화, 폐기물 수집·운반 등 폭염 고위험 업종

\* (발주공사) 건설공사 현장

③ 배달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동 쉼터(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생활물류 쉼터 포함) 신설 및 확대

붙임 1. 규칙 개정 주요내용. 1부.

붙임 2. 온열질환예방지침(17개 국어 포함) 1부.

붙임 3. 사업장 대응지침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중앙부처, 교육청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귀중

주무관

한진우

행정사무관

나상명

서기관

전결 2025. 7. 18.

신옥균

협조자

시행 직업건강증진팀-1571

접수 건설안전과-5582

(2025. 7. 21.)

우 30117

세종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3층

/ 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

전화번호 044-202-8895

팩스번호 044-202-8095

/ [clutchv@korea.kr](mailto:clutchv@korea.kr)

/ 비공개(5)